

조례 및 규칙안 심사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박성근]

목 차

1	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	1
2	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	4
3	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7

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/발의자 : 2023. 06. 02. / 김홍섭의원 대표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23. 06. 02.
- 다. 상정일자 : 제271회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06.13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홍섭의원)

-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입법 및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
- 거창군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,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·폐지, 의안 심사·처리, 법령해석 등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직무를 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고문의 위촉,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고문의 의무사항,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고문의 운영, 참석 회의 등 진행 사항을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
마. 수당 및 소송비용, 자문실적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,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05. 23 ~ 05. 30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성근)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에 대한 고문 변호사를 지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
-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/발의자 : 2023. 06. 02. / 김홍섭의원 대표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23. 06. 02.
- 다. 상정일자 : 제271회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06.13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홍섭의원)

-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공청회를 제외한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,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운영원칙, 신청 및 승인, 관리 및 지원 등 진행 사항을 정함(안 제3조~제6조)
- 다. 결과의 반영,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, 실비보상을 정함(안 제7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05. 16. ~ 05. 22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성근)

-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
-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/발의자 : 2023. 06. 02. / 김홍섭의원 대표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23. 06. 02.
- 다. 상정일자 : 제271회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06.13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홍섭의원)

- 2022. 01. 13. 전부개정 시행된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방법 개정(안 제2조)
- 나. 임기 등 신설(안 제2조의2)
- 다. 위원회의 기능 신설(안 제2조의3)
- 라. 위원회 개최의 통지 개정(안 제3조)
- 마.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- 바. 위임 규정 신설(안 제8조의3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05. 30. ~ 06. 05.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성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
-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